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경숙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16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에서 생산·가공·유통되는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라. 쌀가공산업 지원 대상(안 제7조)

마. 쌀가공산업 육성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안 제8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제안배경

- 국민의 식습관이 서구화, 간편화 되고 바쁜 경제활동에 따른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으로 인해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쌀값 폭락과 쌀 재고량 증가로 농민의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음
- 연간 1인당 쌀소비량 변화 : ('13) 67.2kg → ('18) 61.0kg → ('22) 56.7kg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현황>

(단위: kg,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비량	67.2	65.1	62.9	61.9	61.8	61.0	59.2	57.7	56.9	56.7
차이	-2.6	-2.1	-2.2	-1.0	-0.1	-0.8	-1.8	-1.5	-0.8	-0.2
증감률	-3.7	-3.1	-3.4	-1.6	-0.2	-1.3	-3.0	-2.5	-1.4	-0.4

- 반면,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 부문 쌀 소비량은 69만 1,422톤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쌀가공산업은 쌀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며 HMR¹⁾, 글루텐 프리 등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이라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식품의 위상이 날로 성장함에 따라 쌀가공식품 역시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20년 대비 14% 증가한 1억6,818만 달러(한화 약

1) HMR : Home Meal Replacement의 약자로 가정식 대체식품을 뜻함. 일부 조리가 된 상태에서 가공·포장되기 때문에 간단한 조리도 혼자서도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337억원)에 달하며, 주요 수출품목은 떡류, 즉석밥, 전통주 등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쌀가공산업 수출 전망 역시 유망한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국내외에서 쌀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쌀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쌀 가공품의 품질 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쌀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함

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
- 본칙 8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안 제3조**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하는 등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본 목표,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유통지원 및 소비촉진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만,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각종 농업·농촌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업무의 중복방지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여지며 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7조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쌀가공사업자를 지원하되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 타 시도의 입법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타 시도 쌀가공산업 관련 입법 현황

연번	조례(시행규칙)명	제정일
1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1-08
2	강원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16-06-17
3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4	전북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16-12-30
5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0-27
6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04-17
7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7-20

- 타 시도의 쌀가공산업 관련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특별자치도 단위의 9개 광역지자체 중 7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이제라도 충청도 역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필요성) 이 조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소비를 촉진하고, 국내외 수요가 높은 쌀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당성)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그 취지가 타당하며, 향후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 (법적합성) 관계 법령 위배 또는 저촉 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법적합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향후 도지사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철저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